

강원도, 올 10개노선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추진... 지역사 큰 관심

“노선 최대한 분할 발주, 참여기회 늘려야”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간선도로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다소 감소할 예정이어서 도 건설업체는 분할 발주 확대 등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16일 강원 건설업체에 따르면 도는 올해 10개 노선의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총 36개 사업으로 이 중 공사 단계가 22개 사업이다. 올해 개통이 목표인 국도 6호선 둔내~장평~간평(45.2km)과 국도 31호선 소천~도계(10.2km)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장

국도 6호선 둔내~장평~간평
강릉 연곡~두능 연내 개통 목표
춘천~화천 등도 실시설계 예정

도로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줄어
업체, 물량 가뭄 해소 방안 요구

접근도로망 구축 사업을 조기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축 중인 경기장 접근도로망은 국도 6호선과 국도 59호선이다. 국도 6호선은 둔내~장평~간평 구간을 비

롯해 강릉 연곡~두능(12.7km)이 올해 10월 조기 개통될 예정이다. 국도 59호선은 평창 마동~마평(3.3km)과 정선 나전~숙암(8km), 숙암~평창 마동(6.7km) 구간이 올해 건설이 완료된다.

이 외에도 도는 올해 국도 5호선 춘천~화천(19.7km) 등 9개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도 4호선 남양주~춘천(31.3km)에 대해 기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도 건설업체의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올해 간선도로 사업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원주청의 도로 관

련 사업 예산은 4571억원으로 지난해(6192억원)의 73% 수준이다.

이 때문에 도 건설업체는 발주처가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선을 최대한 분할 발주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 요구사항이다.

도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는 규모가 큰 광역도로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 도에서 추진하는 국도 사업에 관심이 높다”면서 “최근 원주지방국도청 등에 분할 발주 확대 등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아하! 그렇구나

간접비의 제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기간 연장이 함께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간접비가 증액되었으므로 그 금액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발주기관이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기간의 변경 등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사유와 조정금액 산정방법 등을 전혀 달리할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고 간접비도 증액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종전의 총 공사기간을 전제로 한 간접비의 증액일 뿐이고, 총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06713 판결).

한편 간접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이후에 법원이 산정결과인 간접비를 다시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당거나 나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절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연장된 공사기간 중 일부는 설계변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동안 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및 조정 과정, 건설회사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일단 산정된 공사비에서 10%를 감액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713 판결).

간접비청구권이 포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변경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로써 간접비청구권이 포기되었다고 발주기관이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문구는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고, 변경계약 체결 당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차수별 계약에 관한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는 추후 계약금액 조정 요청 예정'이라는 공문을 건설회사가 발주기관에 보낸 점을 들면서, 간접비청구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가합80465 판결).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